

2017 No.4 4e 연구리뷰

E-2R/E-Research Review

MSDS상의 영업비밀 등록 · 심사 방안 마련

02p 연구배경

연구기간 / 핵심단어 / 연구과제명 / 연구배경

03p 주요 연구내용

연구결과 / 시사점

04p 연구활용방안

제언 /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 활용



산업경제연구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MSDS상의 영업비밀 등록 · 심사 방안 마련



연구기간	2016년 4월 ~ 2016년 10월
핵심단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MSDS, 알권리, 심사
연구과제명	선진국의 MSDS 제도 및 영업비밀 등록 · 심사제도 운영사례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 최근 화학사고가 빈발하면서 화학물질 정보와 관련하여 국민과 근로자의 알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EU,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MSDS상 적용하려는 영업비밀 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거나 심사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MSDS 제도 및 영업비밀 등록 · 심사 등 운영사례를 연구하여 선진국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제도 개선 여부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연구결과



[영업비밀 심사제도 개요 - 캐나다]

- HMIRA :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Act(캐나다 유해물질정보심사법)
- HMIRC :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Commission(유해물질정보심사위원회)

구분	우리나라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OSHA
관련법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REACH 제33조, 제43조	HFA 제33조, 제43조	TSCA40 C.F.R. 1.72.72)
영업 비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2호의 제2호	CLP 제24조	HMIRA 제13조	TSCA40 C.F.R. 1.720.720.35, 720.300	OSHA40 C.F.R. 1.1910.1200 Appendix B
영업비밀 등록제도	X	O	O	O	X
영업비밀 인정대상	· 화학물질명 · 구성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 CAS등록번호 · 상품명 · 함유량(%)	· 성분의 화학물질명 · 기호명 · IUPAC 명칭 · CAS등록번호 · CAS등록번호 · 일반명(usual name) 또는 · 기호명(Trade name) · EINECS 또는 · ELINCS 번호 · 기타 식별정보 · 기호명	· 화학물질명 · 성분의 화학물질명 · CAS등록번호 · CAS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 함유량 · 독성연구결과 · 고유주의 경우 · 공급자정보 · 브랜드명 · 기호명	· 화학물질명 · 성분의 화학물질명 · CAS등록번호 · CAS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 함유량 · 합성성 · 제조, 처리, 보존공정 · 인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 화학물질명 · 성분의 화학물질명 · CAS등록번호 · CAS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 함유량 · 합성성
심사 기구		EOHA 내 심사기구 (비상설 기구)	Health Canada Screening Office (전담상설기구)	EPA Legal Office (상설기구)	Area Office (상설기구)
심사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일반적인 영업비밀 개념이 MSDS 제도상의 영업비밀보호에도 적용되어 영업비밀의 의미는 각 국가별로 유사하였으며, 국내의 영업비밀 판단의 법적 기준은 국제적 수준을 충족함	WTP-TREPs 제33조 제2항 비공개성/비밀관리성/경제성/합법성/소유권/신뢰성/노출방지/공공의 존엄	HMIRA 제33조 제2항 비공개성/비밀관리성/경제성/합법성/소유권/신뢰성/노출방지/공공의 존엄	TSCA 40 C.F.R. 2.208 비공개성/비밀관리성/경제성/합법성/소유권/신뢰성/노출방지/공공의 존엄	TSCA 40 C.F.R. 2.208 비공개성/비밀관리성/경제성/합법성/소유권/신뢰성/노출방지/공공의 존엄

[주요 국가별 영업비밀 심사제도]

- EU, 캐나다 등에서는 MSDS 제도상의 별도의 영업비밀 개념은 없고,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일반적인 영업비밀 개념이 MSDS 제도상의 영업비밀보호에도 적용되어 영업비밀의 의미는 각 국가별로 유사하였으며, 국내의 영업비밀 판단의 법적 기준은 국제적 수준을 충족함
- 영업비밀보호의 신청대상은 각 국가별로 공통된 사항과 국가별 특이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대상은 선진국 제도에서 공통사항으로 인정되고 있는 영업비밀보호 신청대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영업비밀 적격성에 관한 심의는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통하여 비공개성, 비밀관리성, 경제성, 유용성 등이 심사의 기준이 됨
- 캐나다의 경우 심의기준은 정보의 비밀성에 관한 심의와 아울러서 신청인이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가 유해물질정보관리시스템(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에 적용받지 여부와 관한 검토 내용이 추가되어 있음
- EU, 캐나다의 경우 총칭명(generic name)과 함유량 표시의 적합성 등이 심의내용에 포함이 되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반드시 영업비밀 등록번호를 물질안전보건자료(SDS)에 적시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 신청 시 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수수료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시사점

- 선진국의 MSDS제도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업비밀 인정을 위한 등록 ·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업비밀 적용의 타당성을 심사 하기 위한 심의기구가 상설로 존재하거나 신청시에 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향후 등록심사제를 도입할 경우, 캐나다를 모델로 모든 물질에 대하여 영업비밀 보호 신청을 인정하고, 신청시 전담기구에서 심사는 방법과 EU와 같이 유해성이 낮은 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보호신청을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언

- 현재 우리나라 MSDS 제도상 영업비밀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등록 · 심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함에 있어 화학 물질관리체계의 차이점에 유의하여 제도 도입 필요성과 제도 정립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제도 도입 시 행정부담의 경감 등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 기구의 상설 운영, 영업비밀 신청 가능 물질의 제한, 신청 수수료 부과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영업비밀성 판단에 있어서 비공개성, 비밀관리성, 경제성, 유용성 등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적 기준이 적용되나, 이 기준들이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 · 통괄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청인 내지는 심사인에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활용

- MSDS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제도 개선 등 화학 물질 정보전달체계 선진화의 기초자료로 활용
-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효율적 개정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담당자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정보연구부 이관섭
- ☎ 042) 869. 0311
- E-mail lks0620@kosha.or.kr

01

연구배경

02

주요
연구내용

03

연구
활용방안